

# 김영남 상표법 진도별 기출문제 제5판 정오표

## 1. 진도별 기출문제

문제번호	정정 전	정정 후
150번	<p>해설</p> <p>①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36조 제1항·제3항에 따른 서류 및 정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(제182조 제3항).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i)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ii) <u>제18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등록일(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후지정일)부터 3개월을 말한다(시행규칙 제86조).</u></p>	<p>해설</p> <p>①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36조 제1항·제3항에 따른 서류 및 정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(제182조 제3항).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i)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ii) <u>국제사무국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의3에 따른 영역확장(이하 “영역확장”이라 한다)의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(시행규칙 제86조).</u></p>
152번	<p>해설</p> <p>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출원시 특례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<u>국제등록일(사후지정의 경우에는 사후지정일)로부터 3월</u>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(제189조 제1항).</p>	<p>해설</p> <p>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출원시 특례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<u>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</u>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(제189조 제1항).</p>

## 2. 연도별 기출문제

문제번호	정정 전	정정 후
2022년 21번	<p>문제</p> <p>⑤ 상표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과오로 등록된 경우 등록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무효로 될 수 <u>없다.</u></p>	<p>문제</p> <p>⑤ 상표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과오로 등록된 경우 등록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무효로 될 수 <u>있다.</u></p>

<p>2023년 22번</p>	<p>문제 상표법 제36조(상표등록출원)에서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을 기술한 것이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</p>	<p>문제 상표법 제36조(상표등록출원)에서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을 기술한 것이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ㄱ. 단체표장등록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  ㄴ. 증명표장등록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에 관한 설명과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, 원산지, 사용방법 그리고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ㄷ.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 표시 상품의 생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ㄹ. 업무표장등록: 그 업무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</p> </div>
<p>2023년 23번</p>	<p>문제 상표법 제34조(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) 제1항 각 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</p>	<p>문제 상표법 제34조(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) 제1항 각 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ㄱ. 선출원(先出願)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(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포함한다)와 동일·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·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ㄴ. 동업·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·유사한 상표를 동일·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 ㄷ.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키는 상표  ㄹ. 국가·인종·민족·공공단체·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(故人)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</p> </div>